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가합57363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6. 6. 21.

판결 선고2016. 9. 6.

##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9,445,753원 및 그중 227,219,252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5. 7. 30.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의 양도계약을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89,2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8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5. 8. 20. 접수 제104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

#### 가. 인정 사실

- 1) 원고는 2013. 7. 30. 피고 A와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62,500,000원 중 223,125,000원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되(이자 별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국민은행은 2015. 7. 30. 피고 A에게 보증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 및 사업자등록 폐업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5. 국민은행에게 227,219,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 A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A)에 대해 보증료율에 연 5/1000를 가산한 비율(B)을 피고 A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 일의 양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자의 다음 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C)에 곱한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위약금은 1,437,780원(A, 223,125,000원 × B, 2.4% × C, 98일/365일)이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5)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88,72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29,445,753원(= 대위변제금 227,219,252원 + 위약금 1,437,780원 + 법적절차비용 788,72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27,219,2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15. 7. 3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이후 피고 B가 양수한 위 채권은 2015. 10. 2. 모두 변제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금액은 36,000,000원이었다.

3) 피고 C은 2015. 8. 12.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등기소 2015. 8. 20. 접수 제1044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2015. 9. 3. 피고 C이 승계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피고 A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위 승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이었고, 피고 C은 2015. 10. 7.부터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 매월 612,908원 내지 615,507원을 채무 원리금 변제를 위해 지급하고 있다.

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에게 2015. 7. 30. 보증기한경과로 인한 연체 및 사업자등록 폐업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 15. 국민은행에 227,219,25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피고 A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11. 15.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관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한 변제로 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마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이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변제됨으로써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일부 변제된 후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한 이후 위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일반재산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범위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8-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 종결일과 가까운 2015. 9. 21.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189,2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 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89,240,000원(= 189,240,000원 -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8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다.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 가) 피고 B는 2014. 7. 18. 피고 A에게 38,07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점, 피고 B는 피고 A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로 받을 3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125,000,000원으로 책정하면서(엄밀히 말하면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친 안양원에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아직도 피고 A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 채무를 승계한 이후 위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나) 먼저 피고 B의 선의 여부에 대해 살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2014. 7. 18. 피고 A에게 38,07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C의 선의 여부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 피고 C은 2015. 6. 15. 피고 B에게 출산 및 유아용품의 판매권을 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피고 A가

연대보증하였다. ㉔ 이후 피고 B와 A가 피고 C에게 잔금 30,0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6. 30.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A가 2015. 8. 12. 위 30,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했다(이 사건 매매계약). ㉕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12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 C이 피고 A에게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 C이 승계하였고, 피고 C이 승계한 채무의 액수는 10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잔금 30,000,000원 중 25,000,000원(= 125,000,000원 -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C은 피고 A가 피고 C에게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의 이자가 부담되어, 위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도한다'고 말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6-2호증 참조). ②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189,000,000원 정도임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 C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작성될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C과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125,000,000원임에도 계약서에는 14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매매대금 산정 과정,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㉔ 내지 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강민정

판사강동훈

별지